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경 과

가. 발 의 자 : 송도호 의원 (찬성자 26명)

나. 의안번호 : 제 699 호

다. 발의일자 : 2023. 3. 29.

라. 회부일자 : 2023. 4. 3.

2. 제안이유

- 서울시는 재난 발생 시 재난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기 위해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지난 8월에 내린 기습적인 폭우로 반지하 등 침수취약지역의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어 시장으로 하여금 안전취약계층 및 반지하 등 침수취약지역 거주자가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통해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토록 하는 한편, 관리주체가 설치·운영하는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시장의 점검 권한을 부여코자 하는 것임.

3. 주요골자

- 가.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안전취약계층 및 침수취약지역 거주자가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통해 재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함.(안 제6조제1항제7호)

- 나. 시장으로 하여금 관리주체가 설치·운영하는 재난 예보·경보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신설함.
(안 제6조제4항)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원안(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이하 '시') 인권위원회가 현행 법규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영향평가 결과¹⁾를 반영하여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침해 소지가 있는 조항을 수정하는 한편,
- 시장에게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통해 안전취약계층 및 침수취약지역 거주자가 재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토록 하고, 시장으로 하여금 관리주체²⁾가 설치·운영하는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에 대한 원활한 작동유무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의무)
제5조(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① (생략)	제5조(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 또는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u>안전취약계층</u> 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 ----- ----- <u>안전취약계층(이하 "안전취약계층"이라 한다)</u>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재난 예보·경보시스템 운영) ① (생략)	제6조(재난 예보·경보시스템 운영) ① (현행과 같음)

1)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알림 및 이행 요청(인권담당관-2220, 공문시행일 2022. 3.11.)

2) 제2조(정의) ③ 이 조례에서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과 그 밖에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희망하는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관공서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4.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

<p>1. ~ 6.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1. ~ 6. (현행과 같음)</p> <p><u>7.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통해 안전취약계층 및 침수취약지역 거주자가 재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방안</u></p>
<p>7. (생략)</p> <p>② ~ ③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8. (현행 제7호와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u>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설치·운영하는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u></p>

- 먼저, 안 제4조는 조제목을 현행 “시민의 책무”에서 “시민의 의무”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7조3)에 따라 시 인권위원회가 2021년도에 재난 관련 분야 자치법규 55개(조례 46, 규칙 8, 규정 1)에 대해 서울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개정을 서울시에 권고한 것으로 시민의 인권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짐.
- 다음으로, 안 제5조제2항은 동 조례에서 반복되어 사용되는 ‘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약어로 표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 안 제6조제1항제7호는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3) 제17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 ① 시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경우 인권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 인권위원회는 시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없도록 시장이 사전 조치해야 하는 사항에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통해 안전취약계층 및 침수취약지역 거주자가 재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 현재 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 제38조의2 제1항4) 및 동 조례에 의거하여 재난 피해가 우려되는 총 102개 지구, 495개소에 자동우량 경보시설 등의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 재난 발생 시 TV, 라디오를 통한 재난방송, 해당지역 휴대폰 재난문자방송, 이동형 재난방송 차량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재난 상황을 전달하고 있음.

[표] 서울시 재난 예·경보시설 현황: 102개 지구, 495개소 ('23.1월 기준)

구 분	합계		자동우량 경보시설		자동음성 통보시설		재해문자 전광판	
	지구	개소	지구	개소	지구	개소	지구	개소
서울시	102	495	7	35	62	321	33	139

- 이와는 별도로 시는 '23년 5월부터 전국 최초로 침수 예·경보제를 실시하고 예·경보 발령 시 안전취약계층 및 침수취약지역 거주자의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는 '동행파트너'를 시행할 계획으로,
- '동행파트너'는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어르신, 아동 총 1,071가구 중 희망 가구를 대상⁵⁾으로 가구당 돌봄공무

4)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5) 지원대상 : 반지하주택 거주 재해취약가구(1,071가구)

원 1인, 통·반장 1인, 인근주민 등 5인 내외로 구성됨.

- 시는 시간당 강우량 55mm 초과, 15분 강우량 20mm 초과, 침수우려지역⁶⁾의 도로 침수심 15cm 초과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침수 예보를 발령하고,
- 자치구, 경찰, 소방, 유관기관 등 주요시설 관리기관 뿐만 아니라 ‘동행파트너’에게도 상황을 전파하여 안전취약계층 및 침수 취약지역 거주자가 재난발생을 신속히 인지하고 대피토록 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입장임.

[침수 재해약자를 위한 동행파트너 구성 및 운영계획] - 치수안전과-제5421호 (2023.3.20.)

□ 동행파트너 구성방안

- 지원대상 : 반지하주택 거주 재해취약가구(1,071가구)
 - 반지하주택(지하 2/3이상 문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370), 어르신(531), 아동(170)이 지원대상이며,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을 받아 지원
 - ※ 주거안전 취약주택 1·2단계 실태조사 결과(주택정책지원센터, 2022.12.)로써, 자치구 자체 실태조사를 통해 침수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외 가능
- 인원구성 : 가구당 5인 내외 매칭(돌봄공무원 1인, 통·반장 1인, 인근주민)
 - 가구당 5인 내외로 구성하되, 1개팀이 서로 인접한(도보 5분거리내) 3가구까지 관리 가능. 단, 대상가구가 동일한 건축물에 있을 경우에는 3가구 초과 가능
 - 1) 돌봄공무원 및 통·반장 : 각 1인 필수 선정
 - 2) 인근주민 : 가급적 대상가구와 동일한 건축물에 거주하는 주민을 우선하되,

- 반지하주택(지하 2/3이상 문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370), 어르신(531), 아동(170)이 지원대상이며,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을 받아 지원

6) 침수우려지역 (도로수위계 설치 지역)

- 선정 기준 및 절차
 - (선정 기준) ①100mm/hr 발생시 평균침수심 50cm 이상지역 중 반지하 밀집지역, ②침수취약지역(34개소), ③자치구 추가 요청지역 ⇒ ①, ②, ③ 조건의 대상지역 중 자치구별 우선관리대상 2개소 이내 선정
- 대상지역 선정 결과 : 총 44개소
 - (강북지역 23개소) 종로2, 중구1, 용산1, 성동2, 광진2, 동대문2, 중랑2, 성동2, 강북1, 도봉1, 노원2, 은평1, 서대문2, 마포2
 - (강남지역 21개소) 양천1, 강서2, 구로2, 금천2, 영등포2, 관악2, 동작2, 서초2, 강남2, 송파2, 강동2

불가피한 경우 인접지역(도보 5분거리 내) 거주주민 선정.

- ▶ 원활한 주민 모집을 위해, 관할 동 주민센터로부터 인근주민 추천받아 선정
- ▶ 관할 동장은 통·반장, 주민자치회, 직능단체 등 관련 주민 인력풀을 가동하여 동행파트너 구성요건에 적합한 인근주민 추천

□ 동행파트너 운영계획

○ 기본임무 : 침수우려시 재해취약가구에 상황전파 및 신속 대피 지원

○ 상황별 행동요령

① 평 시

- 동행파트너 구성원간 상호 신뢰형성 및 임무숙지(우기전 2회이내 간담회(주민))
- 단체채팅방(카톡) 등 비상연락체계 구축으로 상황 공유(기상정보, 상황발령 등)
 - ※ 돌봄공무원 주관으로 동행파트너(주민), 재해취약가구를 포함하여 단체채팅방 구성단, 재해취약 가구는 사생활 등 이유로 단체채팅방 참여에 비동의 하는 경우 제외

② 상황발생시

상황구분	구성원별 행동 요령
침수 예보	1) 돌봄공무원 : 동행파트너(주민)에 상황전파 및 담당가구 출동 요청 2) 동행파트너(주민) : 담당가구 출동 및 상황피악, 물막이판 설치유무 확인 등 ※ 자치구 재대본은 침수예보 수신 즉시, 동행파트너 및 재해취약가구에 문자 등 통해 상황전파하고 동행파트너에게 현장출동 요청을 해야함.
침수 경보	1) 돌봄공무원 : 현장지휘, 특이사항 발생시 자치구 재대본 보고 2) 동행파트너(주민) : 침수위기 등 대피 필요여부 판단 및 담당가구 대피 · 지하주택 및 주택 외부에 물이 차오르는 등 침수징후 발견 시 즉시 대피 조치 · 단, 침수경보 발령 전이라도 현장에서 침수위기라고 판단되는 경우 대피 시행

※ 침수 예·경보제 : 실측 강우량 및 도로침수심을 기반으로 자치구별 침수우려상황을 시·구·유관기관(경찰, 소방 등)·시민에 신속 전파하여 사전 대비토록 하는 경고 시스템

○ 따라서 안 제6조제1항제7호는 재난 시 스스로 대처가 어려운 재해약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가 시행예정인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 이는 법 제31조의27)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

7)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 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7조8)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시책 마련 규정과도 부합하기에 의미가 있다 하겠음.

- 마지막으로, 안 제6조제4항은 관리주체가 구축한 자체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는지 시장이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 이는 현행 제6조제3항에서 자체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한 관리주체에게 유사시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의무를 부과함에 따른 후속 조치로,
- 시장에게 점검 권한을 부여해 평상시부터 안정적인 시스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조치라 사료됨.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이 원활히 수행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7조(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유자 시설에 사용할 피난기구 설치
 2.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시설의 소방·가스·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과 생활안전환경 개선
 3.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4.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마스크 등의 용품
 5. 그 밖에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유자 시설에 사용할 피난기구 설치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시설의 생활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재난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취약계층의 특성 및 유형 등을 고려한 대피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